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3일 02시 58분



목차

목차	2
자동차등록	3
수수료	3
관련법규	3
구비서류	3
유의사항	3
과태료	4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이전등록 ▪ 변경등록 ▪ 신규등록 ▪ **말소등록** ▪ 저당권설정/말소등록 ▪ 임시운행허가
- 등록증(번호판)재발급 ▪ 등록원부발급 ▪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

수수료

증지대 1,000원, 등록면허세 15,000원

관련법규

자동차관리법 제13조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~제41조

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▪ 자동차등록증 ▪ 본인 신분증(오신분 신분증) ※ 위임 시 - 위임받는다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의 도장날인),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※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증명서, 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 위임장(법인인감날인) ※ 영업용 차량의 경우 대폐차 공문 	
추가 서류	폐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폐차인수증명서(원본) - 폐차사업자 발행
	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출예정사실증명서 ▪ 자동차번호판(2개) ▪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 ※ (수출업체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▪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▪ 대리인 방문시 자동차소유자 또는 수출업체의 위임장(도장날인) 필요
	도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도난신고확인서(경찰서 발행)

유의사항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.

과태료

- 폐차 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
(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,000원 부과,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,000원 부과)
-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
(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,000원 부과,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,000원 부과)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